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2월 13일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부서별 분산 운영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가. 1,639명 → 1,642명(+3명)

- 집행기관 : 1,611명 → 1,614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가. 정원 총계 : 1,639명 → 1,642명(+3명)

나. 일반직 계 : 1,600명 → 1,603명(+3명)

다. 6급이하 계 : 1,500명 → 1,503명(+3명)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691,142천원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부서별 분산 운영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감염병 대응인력 2명 및 CCTV 통합관리 인력 1명, 총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1,639명에서 3명이 증가된 1,642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부서별 분산 운영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도모코자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